#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2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김형동·김소희·우재준

박정하・배준영・서일준

박수영 • 한지아 • 권영진

진종오 · 김도읍 · 박대출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한지(韓紙, Korean paper)는 닥나무(paper mulberry) 인피섬유를 주 원료로 하여 만든 우리 고유의 종이로서 주로 정보저장 기록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,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.

그런데 한지는 친환경 인테리어소재, 인체친화형 섬유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바, 앞으로의 산업적 가치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음.

이에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3조).
- 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 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 시행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.
- 마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함(안 제7조).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,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, 한지의 활용 관련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사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
- 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·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, 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, 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자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###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한지"란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.
  - 2. "한지제품"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제조기술에 근거하여 제작한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된 결과물로서 실용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.
  - 3. "한지문화산업"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·창작·제작·유 통·전시·소비·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, 한지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

에 따른다.

- 제5조(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(이 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·장기 기본방향
  - 2.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· 연구에 관한 사항
  - 3.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한지문화산업 관련 원재료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
  - 5. 한지제품의 창작·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·개발 및 보 급에 관한 사항
  - 6.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
  - 7. 한지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  - 8. 한지문화산업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  - 9.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
  - 10. 그 밖에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·단체나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한지문화산업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·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창업 및 제작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
-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한지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한지 및 한지제품 제작을 촉진하기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한지 원재료 생산 및 수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제품의 제조시설(한지의 제조 및 생산 시설을 말한다) 등의 유지·복구·복원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한지의 연구개발 촉진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,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등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능력 등을 갖춘 한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수 있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

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
- 3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전담기관의 업무,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을 한지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"양성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 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

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
- 3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한지전시관 등의 설치·운영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우수사례의 발굴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의 생활화· 산업화·세계화 등을 통하여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 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3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연구
  - 2. 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 ·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
  - 3. 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
  - 4. 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

- 제14조(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 등에서 운 영하는 교양강좌, 문화강좌 등에 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설 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한지문화산업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.
- 제16조(청문)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 - 1.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
  - 2.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
- 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